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향상요령 개정(안)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검토의견서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향상요령		검토기관(검토자) :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박용복 국장)	
항목	개정(안)	수정(안)	근거 / 사유
(작성방법) 해당 장, 절, 표, 그림 등 번호기재	(작성방법) 해당 요령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 개정(안)의 해당 내용 복사	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또는 개정 방향 등 검토의 견 제시	검토의견에 대한 근거 및 사유 제시
2.3.2	2.3.2 내진성능 향상절차 3. 내진성능 향상이 수행되는 교량은 내진성능 향상 후에도 소요역량 (요구성능) 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3.2 내진성능 향상절차 3. 내진성능 향상이 수행되는 교량은 내진성능 향상 후에도 상부구조의 부재치수 변경, 지장물 설치 등에 의한 사하중의 변동 및 균열의 진진 등으로 휨강성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요역량 (요구성능) 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내진성능 향상 후, 소요역량 만족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A.3.2.	A.3.2. 교체 받침의 산정 ① 개요 받침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은 내진성능 향상기준 지진 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에서 구한...	A.3.2. 교체 받침의 산정 ① 개요 받침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은 내진성능 향상기준지진 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에서 구한...	용어의 띄어쓰기 통일
3.1.4.4	3.1.4.4 교대 구체의 보강 1. 지진력에 대해 교대 구체는 안전(휨 및 전단) 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교대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대 구체를 직접 보강하거나 다른 구성 요소의 보강으로 교대의 지진력을 저감하는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3.1.4.4 교대 구체의 보강 1. 지진력에 대해 교대 구체는 교축방향과 교축직각방향(횡방향)에 대해 안전(휨 및 전단) 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교대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대 구체를 직접 보강하거나 교대 기초의 단면 확대 또는 뒤통부부의 토압 저감 등과 같은 다른 구성 요소의 보강을 통한 교대의 지진력 저감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교대 구체의 안전성 및 지지력 저감공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필요
3.1.5.3	3.1.5.3 말뚝 및 말뚝-기초 연결부의 보강 2. 지진보호장치(탄성받침 포함)에 의한 보강이 아닌 경우 보조말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5.3 말뚝 및 말뚝-기초 연결부의 보강 2. 지진보호장치(탄성받침 포함)에 의한 보강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보조말뚝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세한 공법의 제시 보다는 일반적 기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